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에서 아홉 번째)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회의체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경사노위 산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무위)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6월 28일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4개월여간의 집중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그간 근무위는 전원회의 12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약회의 2차례 등을 거쳤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이뤄냈다.

*재적위원 15명중 14명 참석, 참석위원 14명 전원 찬성

근무위 의결에 따라 경사노위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결 내용을 고용부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였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 시간의 한도를 결정하였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있다.

또한,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다만, 조합원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하였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연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800시간 이내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조합원수 99명 이하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으로, 조합원수 100명~999명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한다.
100명~299명	최대 1,500시간 이내	
300명~9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9,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1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15,000명~29,999명	최대 20,000시간 이내	
30,000명 이상	최대 25,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에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

- < 비교 > 1. 「교원노조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의 경우 파트타임을 사용할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한다. (단, 299명 이하 구간은 예외로 한다.)
 2.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경우 연간시간 한도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협력력 시간 등을 포함한다.



▲ (왼쪽부터)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익위원), 윤종혁 교원 근면위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근로자위원) 이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등을 거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의결은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사노위

는 교원 근면위 부대 의결에 따라 면제년도 재심의를 대비하여 고시 2년 후에 있을 관련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담당 기획과 김경희 사무관

김덕호 상임위원,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참석

“공무원/교사 근면위 합의 성과, 노동시장 개혁과제 논의 속도낼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은 11월 6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 합의 등 한국 사회적 대화의 성과에 대해 알리고, 각국 대표들과 계속고용 등 논의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는 7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경제

사회이사회(UN ECOSOC)와의 협력방안 및 ILO-OECD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차기 이사국 구성 등이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최근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의 속도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포스톨로스 지라피스(Apostolos Xirafis) 국제노사정기



▲ 11월 6일 오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왼쪽)이 참석해 룩셈부르크 경제사회위원회 스테판 헤일리거 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구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시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동평(Wang Dong Feng) 중국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인류애가 필요한 시기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 우리는 제로섬 게임에 매몰되기 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회 참석 외에도 김덕호 상임위원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 경제 및 고용노동 현안 논의를 위해 KOTRA 상해 무역관장을 면담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에 대한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CJ 물류 중국법인과 중국 CJ CPG(소비재)센터를 시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국 및 사무부총장국으로서 사회적 대화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23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의 주도 하에 사회적 대화가 촉진되었던 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동력이 요구되고 있고,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 11월 6일 오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서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 아이오니스 파이다스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전 세계가 도전할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위원회의 활동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손옥이 전문위원